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6

# 서 울 고 등 법 원

## 제 5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6누5518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
| 피고, 피항소인 |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
| 제 1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5구합5325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23. |
| 판 결 선 고 | 2016. 12. 28. |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취득세 102,425,270원, 지방교육세 18,788,85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6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3행의 맨 끝에 "(2012. 10. 2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 및 중개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를 추가하고, 제12행의 "18,788,850원"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3쪽 제15행의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4쪽 제2~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한편,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참조)."

○ 제5쪽 제1행의 "을 제5, 6호증"을 "갑 제12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으로 고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에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6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F의 사업장을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여 대도시의 인구 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마련된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 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즉 대도시에서의 지점의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의뢰했던 법무사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6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련 사업자등록, 사업목적의 변경등기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를 넘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해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6

판사 왕정옥

판사 송혜정